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87
----------	------

제출년월일 : 2009년 10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그동안 신입생과 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사생 자격을 두었으나 고급 인재육성을 위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주요시험 1차 합격자와 대학원생 등에게 까지 확대하며, 소수 장애인은 우선 선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권 소재 2년재 대학 이상의 입학생 및 재학생에 한정된 입사자격을 대학원생 및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로 확대(안 제5조)
-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 및 장애인은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특례선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지방자치법)

첨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과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특례선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 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와 장애인은 특례적으로 우선선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후 최초의 입사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과 사별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사 지원자가 제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특례선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별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와 장애인은 특례적으로 우선선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9 - 1088호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19

제 천 시 장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그 동안 신입생과 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사생 자격을 두었으나 고급 인재육성을 위해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주요시험 1차 합격자와 대학원생 등에게 까지 확대하며, 소수 장애인은 우선 선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의 입학생 및 재학생에 한정된 입사자격을 대학원생 및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 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로 확대(안 제5조)
- 사법시험, 행정·외무·입법·기술고등고시, 공인 회계사, 변리사 1차 합격자 및 장애인은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특례선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의2)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9월 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투자유치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2-921-2940 (제천학사), FAX 02-921-2941 담당자 : 김일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한방Bio 특화도시 “제천”」



제천시



수신자 내부결재

(정유)

제목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09. 8. 19 ~ 2009. 9. 8
 2.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3. 주요 개정사항 : 불임 조례안 참조
 4. 제출된 의견 : 없음
 5. 학후 충진사항 : '09. 10월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후 의회 상정

별지 :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협주자

시행 투자유치담당관-3026 (2009.09.11.)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15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023 /전송 043)641-5039 / - / 공개